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'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(4차)(보험급여과-2569호, 2021.5.17.)
- 나. 호흡기전담클리닉 '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 변경 안내 (보험급여과-2574호, 2021.5.17.)

2.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며,

-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은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공간 또는 의료적 처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사람을 격리하는 공간입니다.

3. 따라서, 국민안심병원의 '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'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그 외 수가 산정기준 및 방법은 관련 지침과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적용대상

'국민안심병원' 또는 '호흡기전담클리닉'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

- 1)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(예: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)
- 2)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

* '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'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수가 산정 불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국민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장,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국민건강
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송서현** 행정사무관 **장태영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1. 5. 25.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유진아**

시행 보험급여과-2669 (2021. 5. 25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